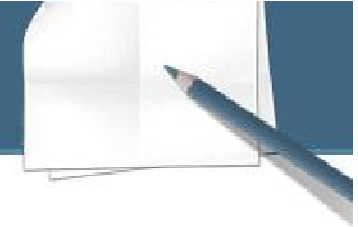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방안과 과제-**

2012. 5

홍 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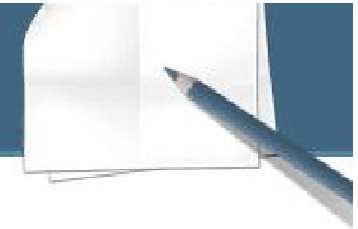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I .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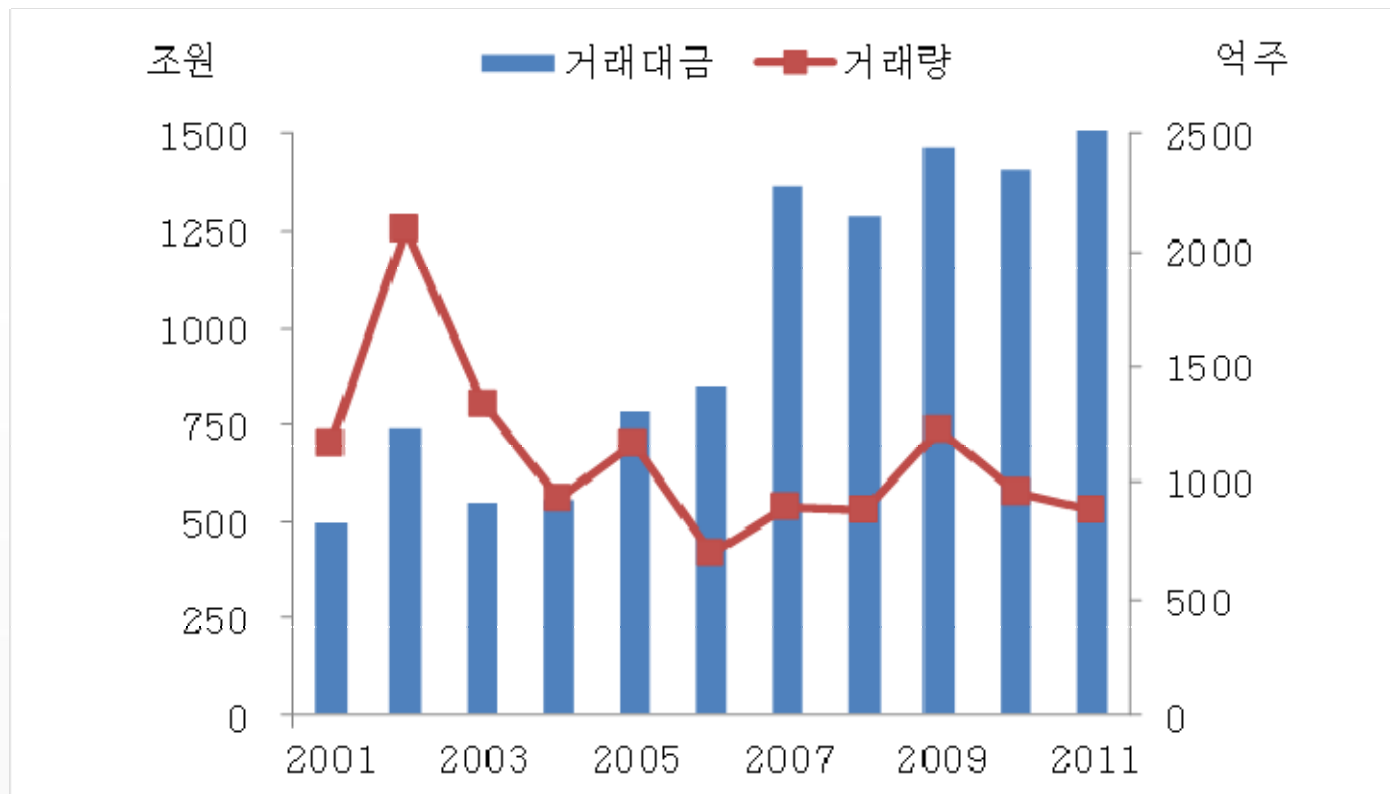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이 1990년에는 79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142조원을 기록**
 -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가별 대표적인 주식시장 중에서 세계 13위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
 -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도 1990년에는 41.3% 수준에서 2010년에는 105% 수준으로 높아짐
 - 2010년 3월 기준으로 이 비율은 시가총액 상위 25개의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11번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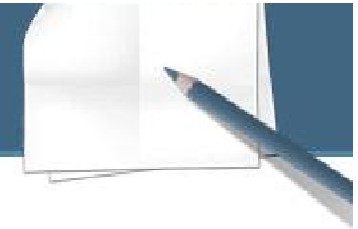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그림 1] 유가증권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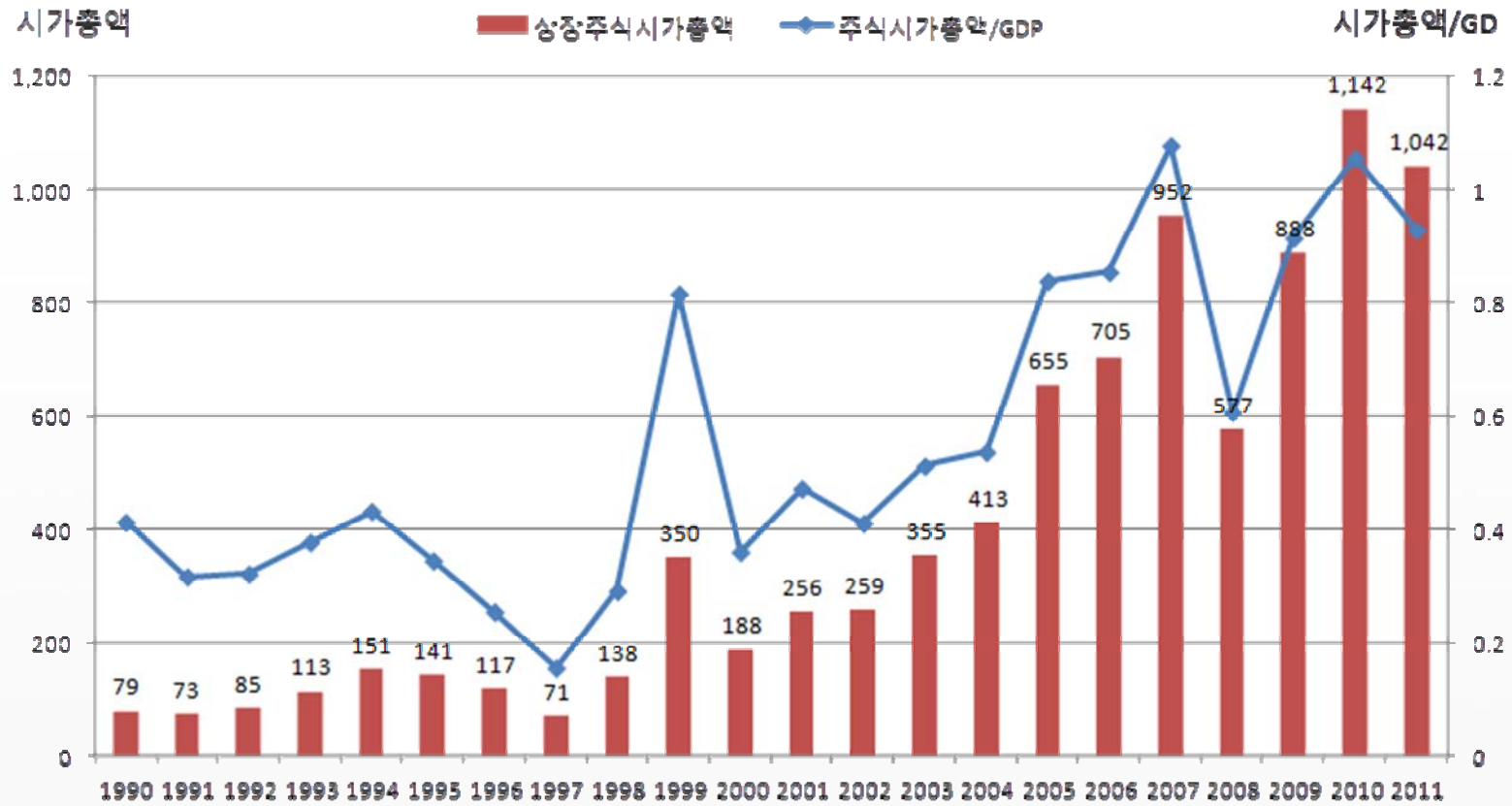


I.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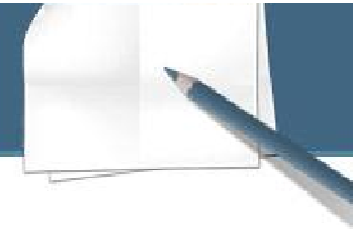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그림 2]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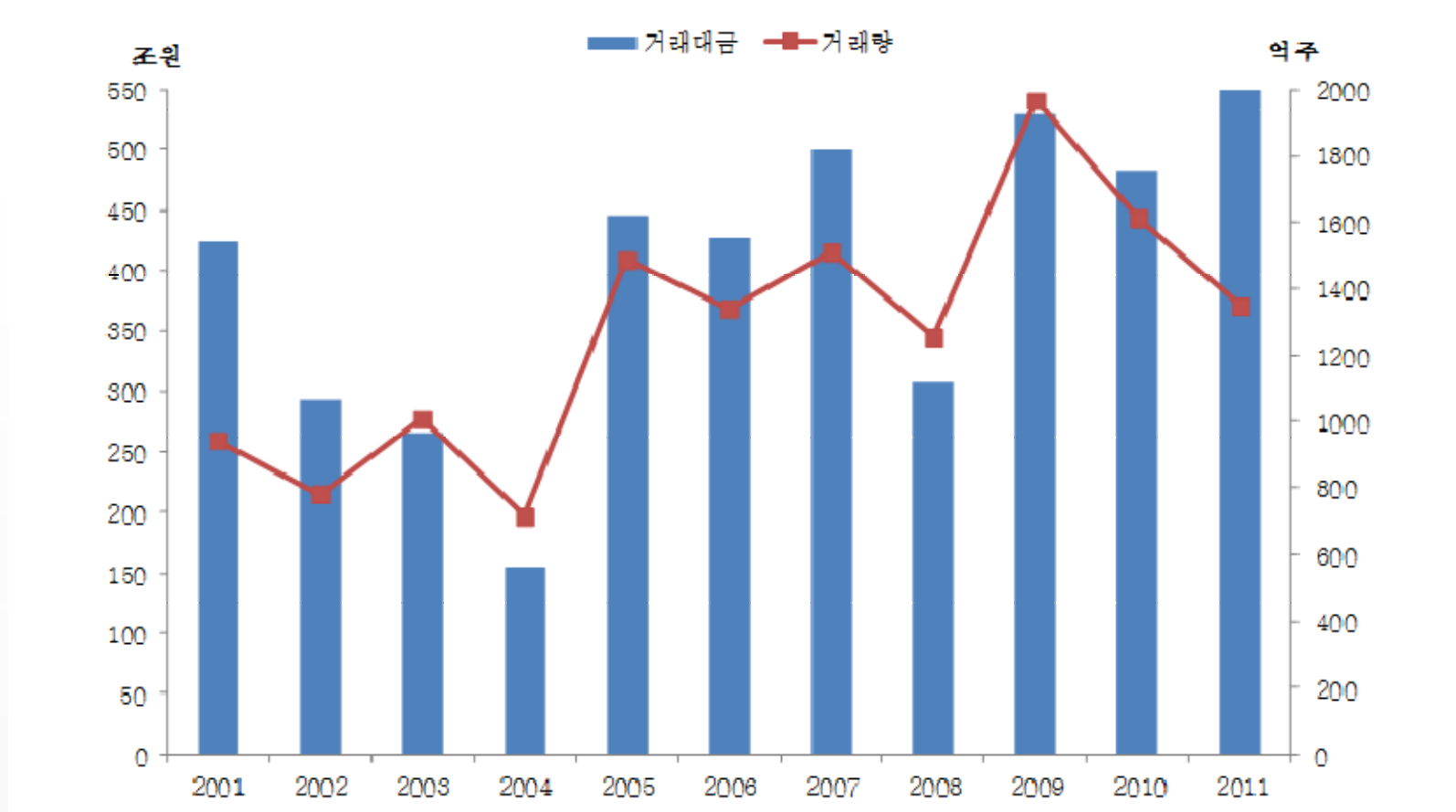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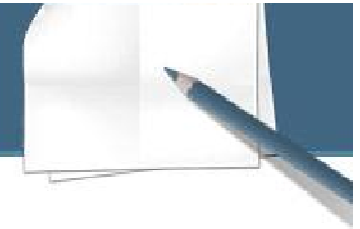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그림 3] 코스닥시장 규모 추이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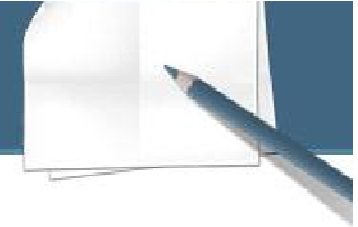


2. 현행 주식관련 과세제도

<표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구 분			세율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상장 코스닥 상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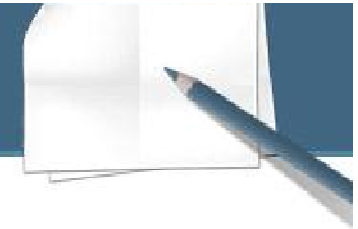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법정세율: 0.5% (비상장주식 등)
- 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 0.15%
[농어촌특별세율 0.15% 포함 0.3%]
- 코스닥에서 양도되는 증권: 0.3%

I .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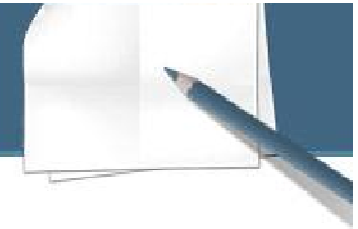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3. 외국의 사례

<표 2>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1), 2)}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 우대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른 우대여부
호주	분리과세	○	○	
오스트리아	분리과세	○	○	
벨기에	분리과세	○	×	
캐나다	분리과세	○	×	
체코	분리과세	○	○	
덴마크	분리과세	○	×	○
핀란드	분리과세	○	×	
프랑스	세대별 종합과세	○	×	○
독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그리스	분리과세	○ ³⁾	×	×
헝가리	분리과세	○	×	×
아이슬란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아일랜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이탈리아	분리과세	○	×	×
룩셈부르크	분리과세	○	○	×
멕시코	분리과세	○ ³⁾	×	×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표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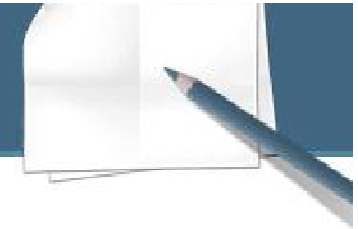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 우대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른 우대여부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폴란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포르투갈	종합과세	○	○	×
슬로바키아	분리과세	○	×	×
스페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스웨덴	분리과세	○	×	×
스위스	-	×	×	×
터키	분리과세	○	○	×
미국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영국	분리과세	○	○	×
일본	분리과세	○	×	×

주: 1) OECD(2006) pp. 33~47의 Table 1.1을 이용하여 작성함.

2) 거래세가 있는 국가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며, 이 밖에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권 국가들이 있음.

3)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자료: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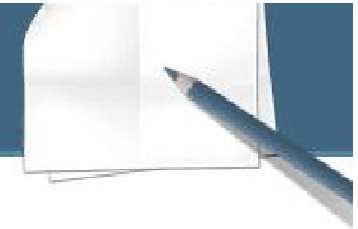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4.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일본

-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유가증권 양도 소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공평 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형**,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과세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원칙과세로 나아갈 것을 건의
 -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 **신고분리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천분리과세는 매각금액의 5.25%를 양도익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
 - 매각금액의 1.05%를 양도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하는 것으로서 거래세와 유사
- **일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6%의 세율을 부과하는 신고분리과세제도로 2001년도에 일원화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을 2년 연기하여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제도로 일원화**
 - 1989년부터 약 14년간에 걸친 과도기를 거쳐서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짐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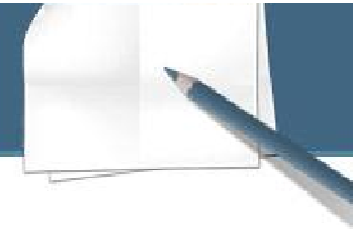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표 3> 일본의 주식양도익 계층별 분포(1990년)

(단위 : 100만엔, %)

소득 구분	소득공제 전 소득(A)	양도익		
		금액(B)	B의 구성비	B/A×100
70만엔 이하	1,154,224	385	0.01	0.03
100만엔 이하	2,336,275	453	0.01	0.02
150만엔 이하	6,586,376	1,112	0.03	0.02
200만엔 이하	11,066,851	1,643	0.05	0.01
300만엔 이하	33,649,631	5,169	0.16	0.02
400만엔 이하	37,094,819	6,901	0.21	0.02
500만엔 이하	35,491,336	8,252	0.25	0.02
1,000만엔 이하	94,552,417	54,227	1.68	0.06
2,000만엔 이하	33,549,908	109,702	3.39	0.33
3,000만엔 이하	6,015,152	91,685	2.83	1.50
5,000만엔 이하	6,000,869	158,909	4.91	2.65
5,000만엔 초과	19,948,594	2,800,082	86.46	14.04
계	287,509,223	3,238,575	100.00	1.13

자료: 石弘光, 『利子·株式譲渡益課税論』, 日本經濟新聞社,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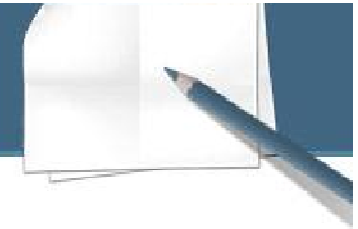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로의 전환과 더불어 1989년부터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궁극적으로 1999년에 폐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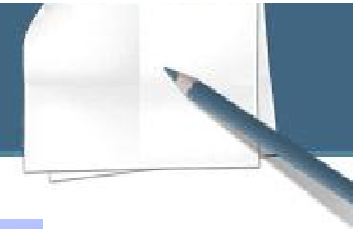
<표 4> 일본 거래세율 변화 추이

연도	세율
1989. 4	0.55% → 0.3%
1996. 4	0.3% → 0.21%
1998. 4	0.21% → 0.1%
1999. 4	0.1% →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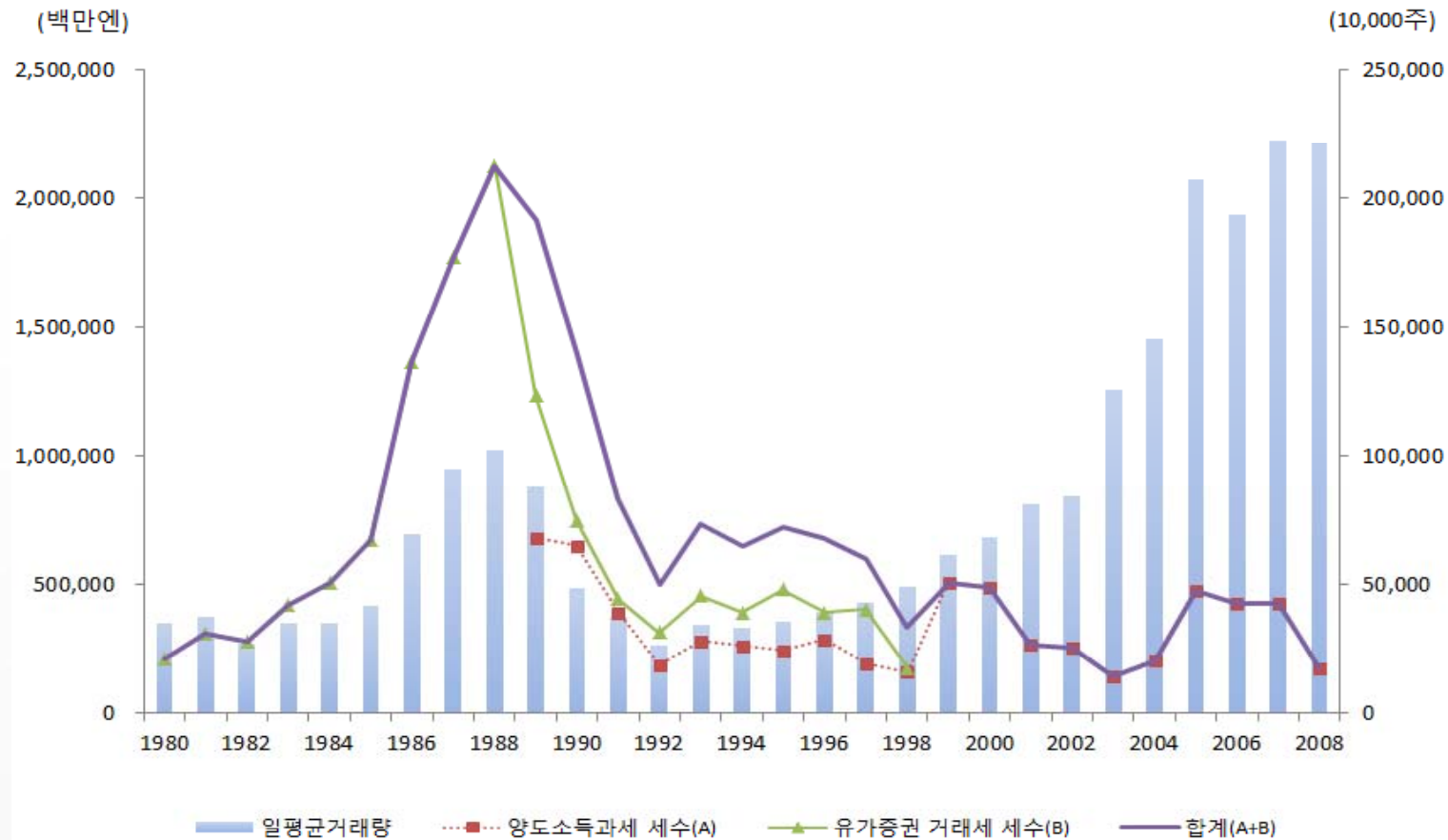


-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시작한 1989년 이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세와 거래세를 합한 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임**
 -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 라는 일본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에 따라 양도세 전환 이후, 거래량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7%의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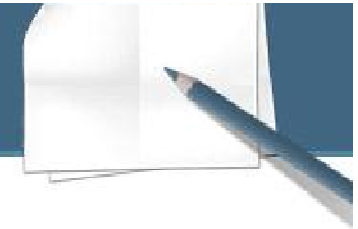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I .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그림 4]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세수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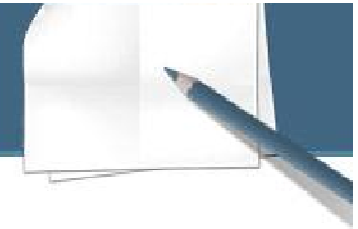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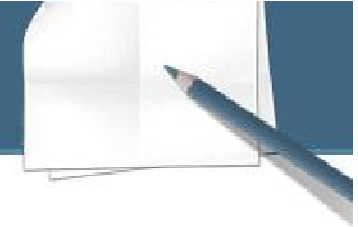
-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는 일반소득과 같이 50~60%의 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
-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000 NT달러 이하인 경우는 15%, 100,000 NT달러 초과시에는 25%의 세율 적용
- 대만 정부의 발표가 있는 후, 처음 개장된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물이 쇠도하여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한 후, 주가하락이 계속되어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
- 또한 시행 1년 만인 1990년 3월,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권거래 손실을 신고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1990년부터 다시 과세를 보류기로 결정



5.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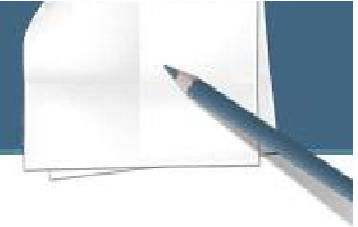
- **과세방법:** 양도차익의 결집효과를 고려할 때, 처음에는 분리과세 형태가 종합과세 형태보다 바람직
- **주식양도소득의 계산:**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
- **세율:** 상장주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한편 누진세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1.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 **장기보유 우대 여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
- **손실공제 및 이월공제 허용 여부:** 도입초기에는 주식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다른 일반소득과의 통산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이월공제는 세수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1년 정도로 한정하고, 그 후 세수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도입시기:** 비과세 범위의 축소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을 취한다면 그 첫 단계는 바로 시행해도 무방

II. 파생상품 거래세



1.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6년에 KOSPI200 선물 거래를 필두로 개설**
 -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 KOSPI200 옵션,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관련 상품인 스타선물 등이 있음
 - 이러한 주가지수관련 파생금융상품을 도입할 당시 성공적인 도입과 유치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음
 - 이러한 비과세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기준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

II. 파생상품 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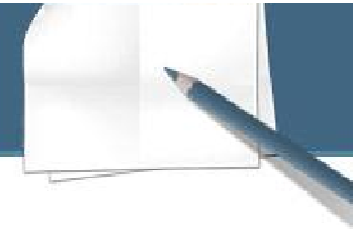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표 5>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모 추이

(단위: 천계약,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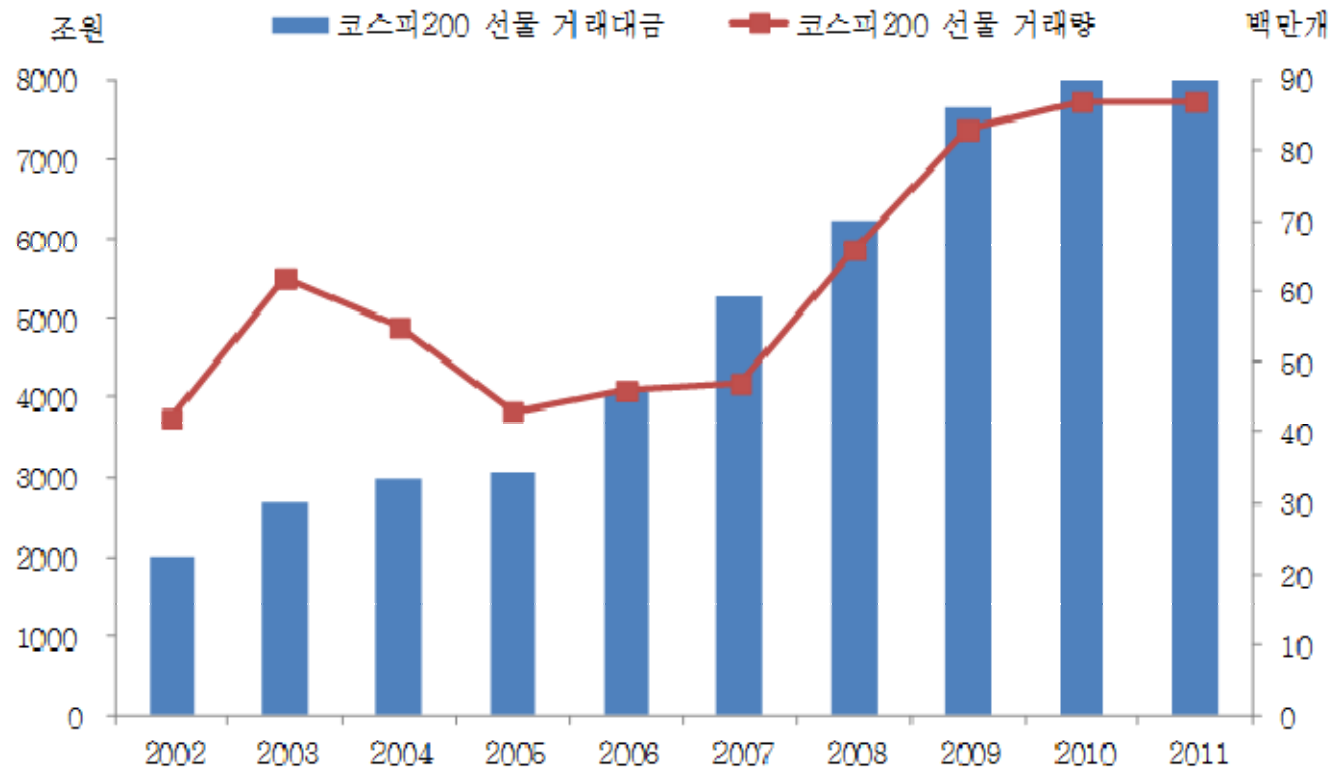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스타선물		합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2002	42,868	1,999,411	1,889,824	125,228	-	-	1,933,072	2,130,538
2003	62,205	2,677,990	2,837,725	159,687	-	-	2,900,658	2,847,146
2004	55,609	2,978,521	2,521,557	144,689	-	-	2,577,372	3,125,570
2005	43,848	3,046,204	2,535,202	140,825	104	1,327	2,579,196	3,188,820
2006	46,606	4,071,889	2,414,423	144,534	90	1,175	2,461,119	4,217,598
2007	47,758	5,272,838	2,709,844	218,374	22	363	2,757,625	5,491,575
2008	66,434	6,237,160	2,766,474	287,229	13	196	2,832,922	6,524,585
2009	83,117	7,652,807	2,920,991	256,578	0.3	3.3	3,004,108	7,909,389
2010	86,762	9,946,347	3,525,899	318,060	0.06	0.8	3,612,662	10,264,408
2011	87,274	11,259,932	3,671,662	436,326	0.04	0.6	3,758,937	11,696,260

자료: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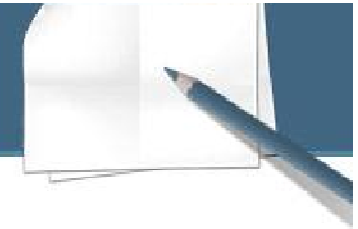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II. 파생상품 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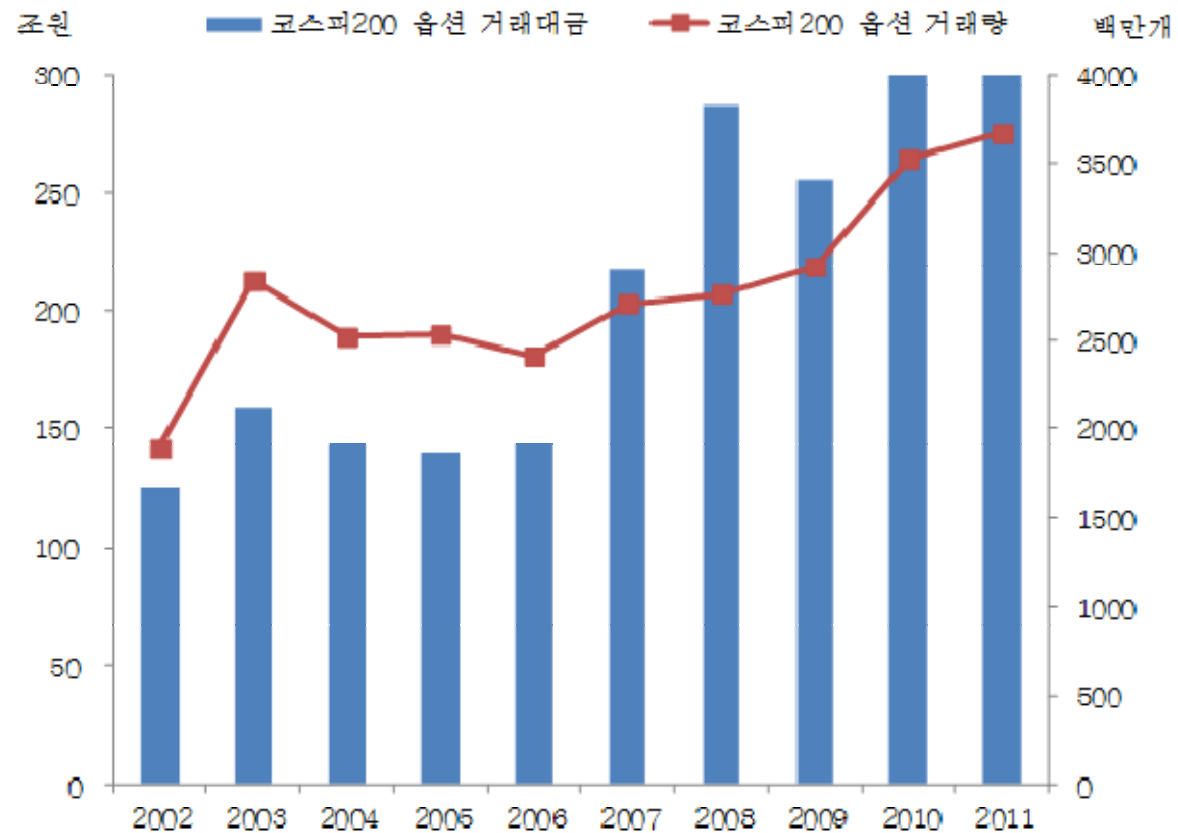
[그림 5] 코스피200 선물 거래금액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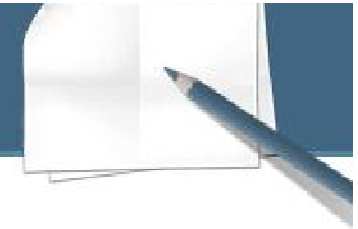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II. 파생상품 거래세



[그림 6] 코스피200 옵션 거래금액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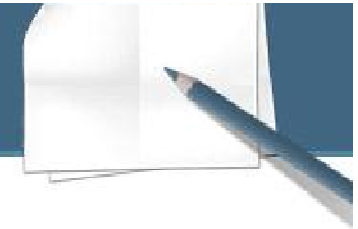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2.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1) 차선책으로서의 거래세

- **국제적인 시장의 통합과 거래소간의 합병·제휴 등 국제적인 경쟁을 고려하고, 다른 나라의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파생상품도 양도차익과세 도입이 바람직**
 - 그러나 현재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비과세제도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물시장과의 균형차원에서도 차선책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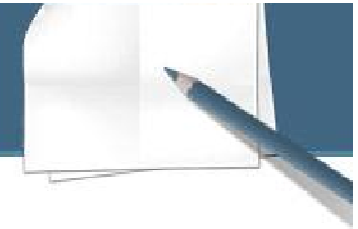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II. 파생상품 거래세



- **거래세의 장점 중의 하나는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 파생상품은 원래 위험회피를 위하여 고안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필수적인 요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비중 등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거래의 비중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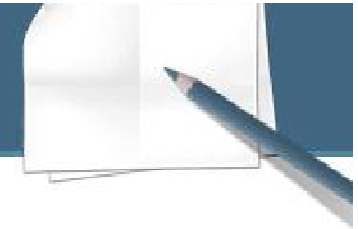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 **2007년 말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의 투입이 있었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재정자금의 환수와 향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II. 파생상품 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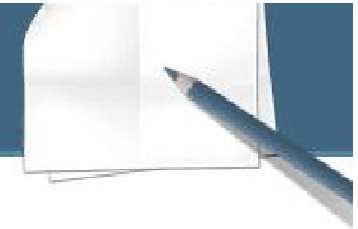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금융거래세의 부과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 시장개방과 자율화, 규제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시장의 가격 기능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임
- 따라서 지나친 투기의 억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거래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
-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게 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됨

II. 파생상품 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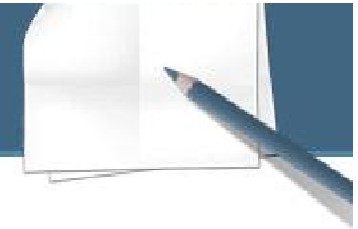
- **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것임**
- 해외 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것인가는 결국 상대적인 거래비용의 문제
- 거래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면 거래세 도입에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됨
 - 전자거래 등의 영향으로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
 - 예를 들어, 옵션 거래에 드는 거래비용은 차상위 거래소와 비교할 때 1/15에 지나지 않음

II. 파생상품 거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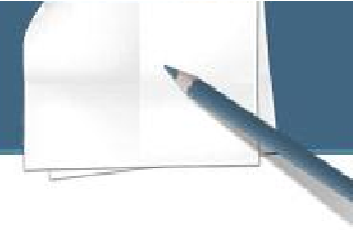
- **거래세 도입 단계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거래세의 도입만으로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도입단계에서는 거래 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준의 세율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I. 파생상품 거래세



2) 세부 고려 사항

- **부과대상:** 거래세의 부과는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하여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부과방식:** 거래세의 부과방식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 **과세표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 (premium)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
- **세율:**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 등을 참고로 할 때, 선물의 경우 0.001~ 0.01% 범위 내에서, 옵션의 경우에는 0.01%~0.1%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Thank You !